

9.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1년 4월 2일
- 발 의 자 : 이영애 의원,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안경은 의원, 이시복 의원, 이태손 의원,
임태상 의원, 홍인표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 상정일자 :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 4월 16일) 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애 의원)

□ 제안이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지킴이 운영 등 아동친화 도시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아동”, “아동친화도시” 등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5조)
-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규정(안 제7조)
-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안 제12조 ~ 제13조)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안 제14조)
-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안 제22조)
-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홍병탁)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아동’과 ‘아동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는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주요시책 및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시장이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하면서 아동의 보행편의, 안전성 등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아동보호구역확대 등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교육·여가·문화생활 등에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 안 제10조는 아동 놀이, 여가, 교육시설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아동권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와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
-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
제2조	정의	‘아동’, ‘아동친화도시’, ‘아동권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규정
제3조	책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책무 규정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규정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 아동의 보행 편의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
제7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
제8조	아동 건강증진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
제9조	아동 교육·여가· 문화생활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아동 전용 시설의 설치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아동전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제11조	교육 및 홍보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제12조	실태조사	아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제13조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 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제14조~ 제21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
제22조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의 직접 참여를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23조	아동권리지킴이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검토결과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기본원칙’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대구시는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아동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2021년 주요 특색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대구 조성,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어린이특화 생활 SOC 건립, 아동안전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단순 보호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고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원칙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신을 실천하고 아동권리를 잘 실현하여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예산확보 등을 통해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 아동행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발굴을 위하여 학교,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되고, 면밀한 계획을 통해 실행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 아동의 직접 참여가 필요한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는 보다 많은 대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타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이 어떠한지 궁금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 광주, 세종이 있으며, 현재는 인천과 대구 등에서 추진 중에 있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가 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조례상 구성 근거가 없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함.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호에서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유무,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제1항의 “30명 이내”를 “25명 이내”로, 같은조 제3항 제6호 “아동·청소년의회 의원”을 “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 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며, 제22조 제5항을 삭제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1호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유무,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로 수정하고,

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제1항의 “30명 이내” 를 “25명 이내” 로, 같은조 제3항 제6호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을 “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으로 수정하며,

제22조(아동참여위원회) 제5항을 삭제하였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p> <p>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유무, 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2 ~ 6 (생략)</p> <p>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p> <p>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1 ~ 5(생략)</p> <p>6. 아동·청소년의회 의원</p> <p>제22조(아동참여위원회)</p> <p>①~④ (생략)</p> <p>⑤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참여위원회의 역할을 아동·청소년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p>	<p>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p> <p>1. <u>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u></p> <p>2 ~ 6 (전부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p> <p>① ----- ----- <u>25명 이내</u> ----- -----.</p> <p>② (전부개정안과 같음)</p> <p>③ 1 ~ 5(전부개정안과 같음)</p> <p>6. <u>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u></p> <p>제22조(아동참여위원회)</p> <p>①~④ (전부개정안과 같음)</p> <p>⑤ (삭제)</p>

대구광역시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 친화 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교통·공원·사회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아동의 보행 편의
-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 3. 아동의 놀이,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 4.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수용
- 5.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 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
-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사업
- 3.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 4.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 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이, 여가 등을 위한 시설
2.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시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입안자,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동실태조사를 4년 마다 실시한다.

제13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4조(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부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구광역시청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대구광역시교육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국장
3. 대구경찰청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부장
4. 대구광역시 구·군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담당 국장
5. 대구광역시의회 추천 대구광역시의원
6. 제22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추진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간사)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지킴이

제22조(아동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
 2.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3.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참여위원회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 ③ 시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아동권리지킴이) ① 시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아동권리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 2.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제언
-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 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